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조문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및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카지노 운영업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업 제외 업종이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서 분리 신설되었더라도 종전과 같이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신설(안 제2조의2)

- 1)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지분 30% 이상을 국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국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지해야 함

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2)

- 1) 국외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하는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함
- 2) 창업기업(업력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포함)과 개인(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은 제외)이 국외 창업한 법인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함

3) 국외 창업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 요건(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기업과 국외 창업기업간 사업적 연관성, 영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상시 근로자 고용)을 규정함

4)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위임함

다. 카지노 운영업을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호)

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및 별표 3)

1)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취소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1차 위반), 지원중단(2차 위반), 지정취소(3차 위반)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완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외에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보유하여 유지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지할 것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의2 단서에 규정한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닌 법인이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2조의2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국외 창업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용역을 자신을 설립한 국내 기업과 거래하거나, 자신을 설립한 국내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다만, 법인인 창업기업을 국외로 이전하고, 그 국내 법인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개인(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에 법인(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고, 국외 창업기업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국내 법인을 말한다), 사업장, 연구소 등 영업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이 경우 국내에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영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적 연관성과 동항제2호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카지노 운영업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 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2호에 자목부터 어목까지를 파목부터 터목으로 하고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차.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4호	지정취소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u> <u>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이</u> <u>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u> <u>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u> <u>한다. 이하 같다)이 국외 창업한</u> <u>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u> <u>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u> 1.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보 유하여 유지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자자 지위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 지할 것
<u><신 설></u>	<u>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u> <u>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u> <u>“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u> <u>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u> <u>로 인정받은 날로 한다.</u>

② 법 제2조제3호의2 단서에 규정한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닌 법인이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2조의2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국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국외 창업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용역을 자신을 설립한 국내 기업과 거래하거나, 자신을 설립한 국내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다만, 법인인 창업기업을 국외로 이전하고, 그 국내 법인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개인(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에 법인(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고, 국
외 창업기업과 사업적 연관성
을 가진 국내 법인을 말한다),
사업장, 연구소 등 영업관련 시
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것. 이 경우
국내에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영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적 연관성과 동항제2호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
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
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1. ~ 2. (생략)

<신설>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
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업종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 2. (현행과 같음)

3. 카지노 운영업

4. -----

5. -----

-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 아. (생략)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별표 3] -----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신 설>					자.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차. <신 설>					차.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제44 조제6항에서 정하 는 지정 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 취소
카. <신 설>					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정당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 취소
타. <신 설>					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스스 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4호	지정 취소		
자. ~ 어. (생 략)					파. ~ 티. (현행 자. ~ 어.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623